



# 2010년 귀속 연말정산관련 변경된 제도 안내

해마다 연말이면 근로소득자는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, 더냈으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는다. 올해 연말정산시 지난해와 달라진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.

## I.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

### 1. 종합소득세율 변경(법 제55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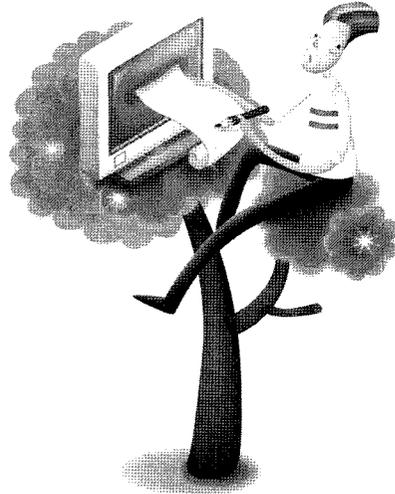
종합소득과세표준	2009년 귀속 세율	2010년 귀속 세율
1,2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6	과세표준의 100분의 6
4,600만원 이하	76만원+(1,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6)	72만원+(1,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)
8,800만원 이하	616만원+(4,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5)	582만원+(4,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)
8,800만원 초과	1,666만원+(8,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)	1,590만원+(8,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)

### 2.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(법 제12조)

- ①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함.(조특법 제30조)
- ② 6세 이하 자녀의 비과세 보육수당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

### 3.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제도 보완법 제34조, 제52조 ⑧

- ① 근로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 및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5년의 이월공제를 허용함.
- ② 국립치과병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을 법정기부금대상으로 추가함.
- ③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: 근로소득금액의 20%(중전 15%)
- ④ 기부금명세서 제출대상이 기부금공제 5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기부금공제 근로자 전부로 확대함.



### 4.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요건 완화 및 월세 소득공제 신설(법 제52조 ④)

- ①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
- ②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,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%를 소득공제(연300만원 한도)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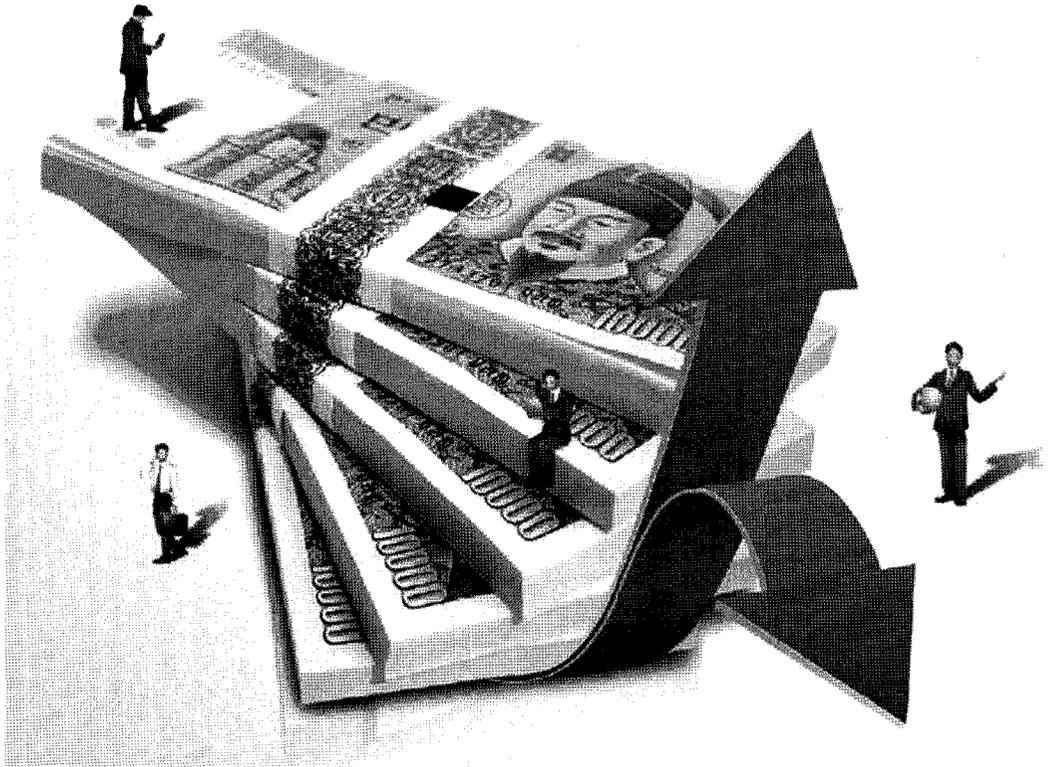
### 5. 미용·성형수술, 보약의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

미용·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(보약 구입 포함) 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함.

## II.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

### 1.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(법 제18조)

- 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2년간 50% 감면(중전 5년간 100% 면제)으로 축소하고 감면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11.12.31까지 적용함.
- ② 감면대상을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



## 2.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중 30% 비과세특례 일몰 폐지(법 제18조 2항)

2010년 귀속부터는 비과세특례는 폐지되고 15%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적용함.

## 3.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(법 제73조)

- ① 기부금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(2009년 12월 31일)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, 특례의 대상에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함.
- ②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됨.
- ③ 공인신탁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3년, 그 외 특례기부금은 2년간 아월공제 허용함.

## 4.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(법 제87조)

- ①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함.
- ② 저가주택(기준시가 5,000만원 이하)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되,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. 다만, 2009.12.31까지 가입자 중 연간 총급여가 8,8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.

## 5.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(법 제87조)

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(연간 120만원 한도)의 40%를 소득공제합(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).

**6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법 제126조 2항**

-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,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함.
-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%(종전 20%) 초과시 공제하고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시 20%,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시 25%로 차등 변경함.

**〈 2010년 귀속 연말정산관련 변경 내용 정리 〉**

구분		2009년	2010년
기본세율		12백만원 이하 : 6% 46백만원 이하 : 16% 88백만원 이하 : 25% 88백만원 초과 : 35%	12백만원 이하 : 6%(변동없음) 46백만원 이하 : 15%(1%p ↓) 88백만원 이하 : 24%(1%p ↓) 88백만원 초과 : 35%(변동없음)
월소득공제		〈 신설 〉	총급여 3,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40% 소득공제(300만원 한도)
주택임차차입금		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국민 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자금만 공제대상	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자금도 공제대상(총급여 3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에 한함)
기부금 이월공제		공익신탁기부금만 이월공제 가능(3년)	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• 법정기부금 1년 • 특례기부금 2년 • 지정기부금 5년
신용카드 소득공제	공제문턱	총급여 20% 초과금액	총급여 25% 초과금액
	공제한도	Min[500만원, 총급여 20%]	Min[300만원, 총급여 20%]
공제비율		20%동일	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20% 직불카드, 체크카드 25%
장기주택 마련저축		불입금액의 40%를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	총급여 8,800만원 이하근로자가 2009년 말까지 가입하고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(금년 가입자는 공제불가)
의료비	미용성형		
	수술비 및 보약구입비	의료비공제 가능	의료비공제 대상 제외